

제10차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 · 인증제도 분과위원회 활동정보

(The 10th Session of the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조미영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1. 서언

제10차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는 19차 총회(1991. 6)이후 설립되어 식품의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분야의 국제적인 원칙 및 지침을 설정하여 국가간 무역원활화를 기하고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동분과위원회는 SPS 협정과 TBT 협정중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야 이행조치(measure)에 관한 국제기준을 작성하는 정책적 성격의 분과위원회로서 금번회의에는 제도의 실제 이행을 위한 지침 설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금번 제10차 회의는 2. 25 ~ 3. 1.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43개 대표와 6개 국제기구 대표 등 161명이 참석한 가운데 Mr. Greg Read(AQIS, Executive Manager) 주재 아래 개최되었고 수입식품관리제도,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 품질보증제도 등을 논의하였다(제10차 회의의제는 표 1. 참고).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과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 회의 의제

의제번호	회의 의제명	문서번호
의제 1	의제 채택	CX/FICS 02/1
의제 2	총회 및 CODEX 타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CX/FICS 02/2
의제 3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안) - 의견(6단계)	CX/FICS 02/3 CX/FICS 02/3-Add.1
의제 4	식품검사및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지침(안) - 의견(6단계)	CX/FICS 02/4 CX/FICS 02/4-Add.1
의제 4.bis	식품검사및인증제도에서의 추적성	
의제 5	식품검사및인증제도관련 기술규정 동등성판정 지침(안) - 의견(3단계)	CX/FICS 02/5 CX/FICS 02/5-Add.1
의제 6	식품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품질보증제도 활용증진지침서 (초안) - 의견(3단계)	CX/FICS 02/6 CX/FICS 02/6-Add.1
의제 7	국제간 교역중 식품관리 관련 긴급사건 발생시 위해관리 지침에 관한 토의문서 - 의견(3단계)	CX/FICS 02/7 CX/FICS 02/7-Add.1
의제 8	기타 사업 및 향후 작업	CX/FICS 02/INF.1
의제 9	보고서채택	CX/FICS 02/INF.2

II. 의제별 주요 논의 내용

1.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서(안)(의제 3)(본문은 별첨참조) (Draft Guidelines for Food Import Control Systems)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서(안)은 1996년 4차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분과회의시 멕시코 정부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45차 집행이사회에서 작업승인후 8차, 9차 분과회의시 회원국간 조항별 검토와 24차 총회 논의를 거쳐 6단계로 상정된 사항으로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지침서는 수입식품관리제도의 설정 및 관리운영시 기존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원칙 및 관련 기준등과 일관되도록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1) 수입식품관리제도의 특징과 2) 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수입식품관리제도의 특징으로는 1) 수입식품 규제사항은 국내식품 규제사항과 일관되어야 함 2) 관할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3) 법령운영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 4)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함 5) 수출국의 관할당국에서 적용된 식품관리제도를 수입국에서 인정함 6) 국가내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함 7) 수입식품의 보호수준은 국내식품의 보호수준과 일관되게 시행함으로 되어 있다.

또한 수입식품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관리시점, 수입식품정보, 수입식품의 검사빈도수 및 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 결정, 긴급상황에 대응, 수출관리인정, 정보교환, 기타 고려사항, 제도의 문서화, 직원훈련, 제도검증에 대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다.

금번회의에서 조항별 검토결과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에 말레이시아의 제안에 따라 ALOP(적정보호수준 :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를 추가하게 되었으나 현재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지침(안)"이 논의중이므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제3조 수입식품 관리제도에서 법령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할당국에게 식품의 적합이력 및 기타 정보를 고려한 시료채취계획을 세워 취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또한 수입금지(reject), 재조정지시(order reconditioning), 수출국으로 반송조치(return to country of export), 행정 및/또는 사법조치(judicial measures)의 권한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관할당국에서 적용한 식품관리제도를 인정할 때 '일방인정(unilateral recognitions)'도 포함한다는 스위스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수입식품의 보호수준은 국내식품과 일관되도록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수입식품 관리의 목표는 국내 생산식품에 적용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라는 문항을 관리접근방식의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는 인도, 스페인의 의견

에 따라 보호수준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였다.

제4조 관리제도의 시행에서는 동지침서의 범위가 식품안전 뿐만아니라 무역원활화의 내용도 수반하므로 “food safety”를 삭제하고 “requirement”로 대체하자는 미국의견을 수용하여 시행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수입식품관리시점에 관하여 수입식품관리제도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EU의 지적아래 “origin”을 추가하고 관리시점마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호주의견을 수용하여 동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화물(consignment)의 서류검사를 토대로 선적전 통과(Preshipment clearance)를 인정하자는 미국의견을 수용하였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조치를 적용하여 얻어지는 관리제도의 효율성은 관할권내에 들어오는 화물의 정보에 따르며 우리나라는 수입식품정보에 제조업자 뿐만아니라 ‘공장등록번호(establishment registration number)’,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여 반영되었고 또한 이외에도 제품규격(description), 보존방법, 발송국, seal identification 번호, 생산업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추가하자는 말레이시아, EU, 미국등의 제안이 수용되어 추가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입식품 검사빈도수를 결정할 때 생산업자, 가공업자,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의 적합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뉴질랜드의 동의아래 반영되었다. 캐나다, 뉴질랜드의 제안에 따라 수입업자는 공인실험실(officially laboratories)등을 통해 화물의 적합성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Codex 시료채취계획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었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시료채취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정정되었다.

결정기준에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검토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제도(appeal system)’를 제안한 인도의견이 반영되었고 국가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나 국제규격에 부합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수입규정의 변경시 상대국에게 즉시 통보한다는 정보교환조항에서 SPS협정 Annex B 5에 따라 무역에 심각하게(significantly) 영향을 주는 경우로 한하자고 제안한 우리나라 의견이 반영되어 정정되었다. 수입식품관리제도의 문서화조항에 대하여 수입식품관리에 관여된 모든 직원의 업무분장을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job function을 제시하자는 EU 의견이 수용되어 수정되었다. 공인된 제삼자기관의 직원은 관할당국의 검사직원과 동일한 자격(Qualification)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정되었다.

동지침서에 대해 이틀간 조항별 검토를 거쳐 8단계로 합의를 이루었다.

2. 식품 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 동등성판정지침서(초안)(의제 4)
 (Draft 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Equivalence of Sanitary Measures Associated with Foo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 동등성판정 지침서(안)은 8차 회의(00. 2)에서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에 관한 동등성 결정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여 CODEX 작업을 개시하게 되었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일본, 모로코, EC등의 기안작업반이 작업하여 47차 집행이사회(00. 6)에서 신설작업으로 승인된 후 9차 회의('00. 12)와 24차 총회('01. 6)를 거쳐 5단계로 승인된 상황에서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다.

동지침서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위생조치(Sanitary measure) 특히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 관련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을 위한 것으로 위생조치에는 기반구조, 프로그램성안/시행, 및 특정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지침서는 동등성판정 일반원칙, 동등성판정절차 및 동등성결정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출국의 경우 수입국에서 적정보호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하고 수출국의 위생조치는 수입국의 ALOP를 달성해야 하며 수출국은 위생조치가 수입국의 ALOP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반면 수입국은 위생조치의 적정보호수준 도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생조치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적정보호수준이 동등하면 수출국의 위생조치를 동등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동등성판정시 수출국의 경험을 고려하고 수입국은 동등성협의를동안 부정당한 방법으로 명기된 조치보다 엄격한 위생조치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수출입국은 동등성판정시 위해평가가 사용되는 경우 국가는 결과물이 명확히 비교될 수 있도록 적용기술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가는 요청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동등성인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대상국가의 위생조치 비교는 명확히 수행되어야 하고 동등성판정과정시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조항별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대표는 동지침서가 WTO/SPS 협정 제4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Codex 지침서 논의시 WTO 회원국의 의무와 권리를 재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WTO 대표는 CODEX 지침서 설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동지침서의 범위에 대하여 멕시코는 동등성결정은 시행과 모니터링, 집행까지 포괄한다는 의견, 아르헨티나대표는 동등성협정의 목적은 제품이나 제품군의 교역을 원활화하고 물리적접사나 기타 다른유형의 관리빈도수를 감소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제안

하여 수용되었다.

EU에서는 “sanitary measure”에 대하여 위생조치의 대상을 넓혀 “from hazards in foods”을 추가한 정의를 제안하였으나 좀더 논의하기로 하였고 동등성 정의에 관하여 아르헨티나는 동등성협정(CAC/GL 26-1997)에서 기히 합의된 내용으로, 멕시코는 동등성 결정을 수출입국간에 공동검토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향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WTO/SPS 협정 2.3조를 주석으로 달기로 하였다.

위생조치와 동등성결정에 있어 수출국의 식품검사및인증제도를 평가할 때 해당 제도는 동등성결정대상인 조치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아르헨티나대표는 WTO/SPS 위원회 결정 내용을 동문항에 반영시키자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논의결과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WTO/SPS 협정과 다른 새로운 입장을 조항마다 제시하였고 영국, 미국, EU, 뉴질랜드, 호주등은 WTO/SPS 협정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의 균형은 이루어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Section 5까지만 검토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3. 추적성(의제 4bis)

(Traceability in the Context of Foo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David Byron은 추적성의 논의 배경과 집행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소개한 뒤 ISO에서 “Traceability system in the Agriculture Food Chain-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Development(ISO/AWI 22519)”문서를 신설작업으로 추진중임을 알렸고 또한 추적성이란 많은 CODEX 기준과 관련되며 대부분 Product Identification 및 회수절차와 연관이 있고 기존 ‘포장식품의 표시’나 ‘유기생산식품의 표시’에 원산지(country of origin)규정이 있지만 식품과 성분의 원산지(origin)에 추적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호주 사무국 Mr. Gascoine은 추적성이란 동분과의 기히 합의된 기준중 ‘검사(inspection)’, ‘인증(certification)’, ‘규제사항(requirement)’에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영국은 동분과위원회에서 추적성 논의가 되어야 하며 식품안전성 및 기타 사항을 포괄하여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논의가 원활히 되도록 drafting group을 구성하자는 제안과 함께 drafting group의 host로 스위스를 추천하였다.

미국은 추적성을 적용할 때 비용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개념이 광범위하므로 식품안전성에 한정하고 작업반을 구성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일본 및 호주등 지지하였다.

그러나 독일, EU등은 동분과에서 논의 이전에 CCGP(일반원칙분과)에서 논리적 근거(rationale)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회원국의 논의결과 동분과에서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야의 추적성에 대해 작업을 개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스위스가 주재한 기안그룹에서 토의 문서를 작성한 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작성될 토의문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CCFICS에서 설정되었거나 설정중인 기준에서 추적성의 적용검토
-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 분야에서 실제로 추적성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개발
- 17차 일반원칙분과 이전에 관련 CODEX 분과의장간의 모임결과반영
- 타분과위원회의 작업중복없이 신설 작업계획 수립
- ※ 기안그룹 :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케냐,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태국, 영국, 미국, EC, BIO, CI, ICGMA

4. 식품검사 및 인증제도의 기술규정 동등성 지침(초안)(의제 5)

(Proposed Draft on the Judgement of Equivalence of Technical Regulation Associated with Food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

식품검사및인증제도의 기술규정 동등성지침(초안)은 23차 총회(99. 6)에서 46차 집행이사회(99. 6)의 의견을 토대로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중 기술규정의 동등성 지침 작업이 개시되었고 금년 47차 집행이사회(00. 6)에서 위생이외의 품질과 적합성평가 등의 식품관리제도 동등성 설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8차 동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위생조치뿐만아니라 기술규정도 별도로 작업을 추진하되 향후 한문서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9차 회의결과 호주의 주도하에 기안작업반에서 동지침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논의된 것이다.

동문서의 범위는 식품관련 적합성평가등의 기술요구사항(technical requirements)의 동등성결정을 위한 원칙 및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기술요구사항이라함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적합성평가규정(conformity assessment requirement)으로 한한다.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이란 합법적인 목표(legitimate objective)를 위해 관

련당국에서 설정한 위생조치외의 규제사항 즉 제품특징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방법 (용어, 기호, 포장, 표기 또는 표시규정등 포함) 및 적합성평가절차(시료채취, 시험검사, 적합성평가·검증·확증, 신고, 인정 및 승인) 및 관련행정규정을 말한다.

의장은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작업에 따라 TBT 관련 지침서의 작업을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범위, 목적 및 적용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은 작업범위가 Codex Standard가 되어야 하며 범위나 유용성면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호주는 동지침서가 Codex 목적인 무역 원활화에 부합되므로 동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미국은 동지침서에 대해 실제적인 용어, 정부혜택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단계절차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여 동지침서를 당분간 기안그룹에 회부하고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지침서가 설정중임을 고려하여 기술규정의 동등성판정지침서를 설정필요성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 기안그룹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미국, EC

5. 식품규정에 부합한 품질보증제도의 활용권장지침(초안)(의제 6)

(Proposed Draft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and Promotion of Quality Assurance Systems to meet Requirement in relation to Food)

식품규정에 부합한 품질보증제도의 활용권장지침은 23차 총회(99. 6) 승인 이후 8차·9차회의에서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미국, 스위스, EC가 참여하여 개정한 후 금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분야에 업체자율기준인 품질보증제도를 정부기준으로 통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품질보증제도 활용지침서개발이 CCFICS의 업무분장이므로 동 사항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해 왔다.

동지침서는 식품업체에서 실시하는 품질보증제도를 공인 또는 정부평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품질보증제도의 성격 및 목적, 품질보증제도의 공식인정, 공인품질보증제도의 혜택, 정부평가프로그램의 특징으로 구성되어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9차 회의이후 기안그룹에서 검토후 3단계로 회부되어 논의하게 된 것으로 Mr. David Byron의 문서배경설명후 전반적인 의견(General Comment)을 교환한 후 section별 검토하였다.

David Byron은 ISO에서 '식음료업체를 위한 ISO9001:2000 적용지침서'를 발간하였

고 '식품안전관리제도 ISO 22000'에 대한 작업이 개시되었으며 ISO 9000를 토대로 한 '농업품질제도규격(AG9000)'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인도의 경우 품질보증제도를 통해 제품의 품질은 확보되나 개도국의 경우 HACCP와 QA를 겸용할 수 없으므로 HACCP과 QA를 분리하여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고 EU에서는 식품업체에서 품질보증제도를 사용되어야 하고 권장되어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는(not officially recognized) 아니되며 업체의 자율관리를 정부관리(official control)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는 정부감사가 되어야 하나 QA는 식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미국도 지침서의 실제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동지침서를 2단계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section별 의견은 기안그룹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기안그룹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인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스위스 파푸아뉴기니, 미국, EC 등이다.

6. 국제간 교역중 식품관리 관련 긴급사건 발생시 위해관리 지침에 관한 토의 문서(초안)(의제 7)
(Proposed Draft Revision of the Codex 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Food Control Emergency Situations)

제23차 CODEX 총회(99. 7)에서 벨기에 축산물 다이옥신 오염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간 교역시 식품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어 동분과에서 기해 설정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정보교환지침(CAC/GL 19-1995)'이 있지만 수출입상황에 적용 조치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없다는 점을 총회에서 인정하여 사무국은 CCFICS에서 예상치 않은 사건발생시의 관리지침을 설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호주사무국에서 8차에서 '국제간 교역으로 식품관리 관련 긴급사건 발생시 위해관리지침에 관한 토의문서'를 제출하여 9차회의('00. 12)와 24차 총회('01. 6)에서 신설작업으로 승인한 것이다.

'식품긴급상황(food emergency situation)'이란 위해가 확인된 경우와 미확인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식품안전사고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위험성, 위해분석적용 및 정보교환, 정보전달, 수출국의 책임, 수입국의 책임, 식품유통수준, 식품의 재수출, FAO와 WHO의 역할)과 정보교환서식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EU는 식품유통단계에서 긴급사건발생시 위해분석의 중요성 및 수출입국의 책임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목을 "Food Safety Emergency Situation"으로

정정할 것과 통보절차와 긴급상황종료통보(End-of-Emergency Notification) 등의 내용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식품을 재수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WTO 협정 5.7조에 따라 임시위해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6항에 “significant”를 “relevant” 또는 “high”등으로 정정하자는 의견과 식품의 재수출의 결정책임은 수입국에게 있다(22항)는 의견, FAO, WHO 및 기타 국제기구에 식품안전긴급상황을 통보해야 한다(23항)는 의견, 지침서의 목적이 국가간 정보교환원칙인지 정부에서 적용할 원칙(29항)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등을 나누었다.

미국, 태국, 멕시코, 뉴질랜드에서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단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여 차기 회의에서 2단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안그룹은 호주, 독일, 일본, 네덜란드, 파푸아뉴기니, 미국, EC 등이다.

7. 기타 사업 및 향후 일정

ICGFI(FAO/WHO/IAEA)에서 18차 회의(2001. 10.)에서 검토한 ‘식물위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조사식품증명서의 국제무역규정에 관한 정보문서(Information Paper on Requirement in International Trade for Certificates for Foods Irradiated Other Than for Phytosanitary Purposes)’를 금번 회의에 제안하였으나 David Byron은 Codex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에서 ‘Codex General Standard for Irradiated Foods’와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the Radiation Processing of Food’에 대한 실행규범을 작성중이며 동분과에서 특정증명서규정을 설정한 바가 없음을 알렸고 미국, EC는 조사식품은 관리대상이나 식품안전성문제가 아니므로 정보문서로 사용하고 Codex에서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안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25차 총회(‘03. 6’)시 상정할 의제검토를 위해 2002. 12. 개최 예정이다.

III. 결론

제10차 식품의 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수입식품관리제도지침서, 위생조치의 동등성판정, 품질보증제도 등의 의제별 논의시 EU, 남미(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국가간 공조를 이루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금번회의에서는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야의 추적성 작업을 동분과에서 개시하기로 하여 기안그룹을 구성한 것이 그 의의가 있으며 이 사항은 일반원칙분과, 식품표시분과, 식품위생분과등과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미국, 호주, 캐나다 입장과 EU, 스위스, 일본등의 입장이 차이가 있고 접근방식에서 서로 다르므로 동분야에 대한 입장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회의참석으로 회의방향 분석 및 국가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별첨

수입식품관리제도 지침(안) (Draft Guidelines for Food Import Control Systems) (8단계)

제 1 조 - 범위

1. 동문서는 수입식품관리제도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정당한 (unjustified) 무역기술장벽없이 교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설정되고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동지침서는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원칙(Codex 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¹ 과 일관되며 식품의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의 계획,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Design, Operation,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²의 부속성격으로 수입식품관리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 정의³

[적정보호수준(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ALOP))이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조치를 설정할 때 국가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는 보호수준을 말한다.]

1. 식품의수출입검사및인증원칙(Principles for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CAC/GL 20-1995)

2. 식품의 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의 계획,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Design, Operation,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AC/GL 26-1997)

3. * : 식품의 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의 계획,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Design, Operation,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AC/GL 26-1997)에서 인용된 것

** : CODEX 규정집(12차 개정본)에서 인용된 것

검사 (audit)*란, 활동내역 및 관련 결과가, 계획된 목표에 일치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기능적으로 독립된 검토를 말한다.

인증 (certification)*이란, 정부인증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이 식품 또는 식품관리제도가 규제사항(requirement)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식품의 인증은 경우에 따라 여러 종류의 검사에 근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사 활동에는 현장에서의 연속 검사, 품질보증제도에 따른 감사 및 최종제품의 분석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검사 (inspection)*란, 그 식품이 규제사항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과정과 최종제품의 검사등 식품, 식품관리제도, 원료, 가공공정 및 유통과정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legislation)*이란 국민건강보호, 소비자 및 공정무역조건보호 등을 포함한 식품과 관련하여 보건당국에서 공포한 법(acts), 법령(regulations), 규제사항(requirements) 또는 절차(procedure)를 말한다.

정부인증(Official accreditation)*이란 관할권이 있는 정부기관에서 검사 및/또는 인증조직이 검사 및 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이다.

정부검사제도 및 정부인증제도 (official inspection systems and official certification systems)*란 정부기관이 규제 또는 집행기능, 또는 두 가지 기능 모두를 수행할 법적인 권한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인검사제도 및 공인인증제도 (officially recognized inspection systems and offici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systems)*란,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허가하였거나 인정한 제도를 말한다.

규제사항 (requirements)*이란, 국민건강의 보호,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조건등 식품의 무역에 적용하기 위해 관할행정당국이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위해평가 (risk assessment)*란, 예를 들어 식품에 존재하는 첨가물, 오염물질, 잔류물질, 독소 또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야기되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의 발생가능성 및 심각도(severity)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위해분석 (risk analysis)*이란 위해평가,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전달로 이루어진 세가지 과정이다.

제 3 조 -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일반특징

2. 수입식품 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수입식품 규제사항은 국내식품 규제사항과 일관되어야 한다.
 - 관할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 법령운영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 수출국의 관할당국에서 적용된 식품관리제도를 수입국에서 인정한다.
 - 국가내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한다.
 - 수입식품의 보호수준은 국내식품의 보호수준과 일관되게 시행한다.

수입식품 규제사항은 국내식품의 규제사항과 일관되어야 함.

3. 규제사항(Requirement)이란 특정 기준을 가진 최종규격(end-point standard)과 시료채취규정으로 통상 표현된다. 동 규제사항에는 규격, 시료채취, 공정관리, 생산/운송/보관 또는 공동조건(combination of these)으로 구성될 수 있다.
4. 특정 환경에 적용되는 규제사항의 범위와 강도는 위해에 비례해야 한다. 위해는 원산지, 보유기술, 적합이력 등 및/또는 수입시 제품시료의 특성 검토 등의 특정 상황이나 유사상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위해는 한가지 원인에서 다른 원인으로 다양할 수 있다.
5. 가능한 한 규제사항은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규제사항에 따라 모범제조관행과 같은 공정관리를 한다면 수출국의 검사·인증제도 및 경우에 따라 시설이나 절차등의 감사를 통해 적합(compliance)이나 동등

성(equivalence)을 결정할 수 있다.⁴

관할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

6. 통관시점과 보존·유통기간 및/또는 판매시점에서의 수입식품검사를 담당하는 관할당국은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동일 화물에 대해 동일 분석을 위한 다수(multiple) 검사 및 중복(duplicative) 검사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7. 많은 국가들, 예를 들면 지역경제그룹에 속한 국가의 경우 타국가에서 시행한 수입관리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식품관리를 수행한 국가는 그 역할, 책임 및 운영절차를 명백히 규정해야 하고 최종 도착국 또는 국가당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이며 투명한 수입관리제도가 되도록 한다.
8. 수입국의 관할당국이 제삼공급업자를 수입관리를 수행하는 공인검사기관 및/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동약정은 CAC/GL 26-1997 제8조 정부인정(Official accreditation)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상기한 공급업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대상 화물의 시료채취
 - 시료분석
 - 정부규제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업자가 운영하는 품질보증제도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적합성 평가

법령운영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

9. 법령의 목적은 수입식품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와 권한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법령은 관할당국을 설립하게 하며 수입제품을 규제사항에 비추어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4.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의 계획,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Design, Operation,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AC/GL 26-1997) 54항

10. 법령은 관할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 담당 직원 임명
 - 식품 화물의 수입시 사전통보 요구
 - 문서제출 요구
 - 수입국내 집포 개업 허가여부 등을 검사하고 식품과 그 포장을 시험분석하며 시료를 수거하고 수출국이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검사 및 서류증명서를 토대로 제품의 동일성 검증등의 분석시험을 개시
 - 특정 식품의 적합이력과 증명서 첨부서류의 합법성 및 기타관련정보를 고려하여 위해에 기초한 시료채취 계획 적용
 - 화물의 검사 및 시료분석을 위한 수수료 부과
 - 인정된 실험실을 승인하거나 실험실을 인정
 - 수락, 거부(reject), 억류(detain), 파기, 파기/재조정/가공/재수출 지시, 수출국으로 반송, 식용이외의 용도로 변경
 - 수입후 화물 회수
 - 국가내 운송 또는 수입통관이전 보관중 운송되는 화물의 관리유지
 - 특정 규제사항의 위반시 행정 및/또는 법적 조치시행
11. 또한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 수입업자의 등록 또는 허가
 - 수입업자에 의해 사용된 검증제도의 승인
 - 정부조치에 대한 항소제도(appeal mechanism)
 - 수출국 관리제도의 평가
 - 수출국의 관할당국과의 인증 및/또는 검사협정(arrangement)

소비자보호를 우선으로 함.

12. 수입식품관리제도의 계획 및 운영에 있어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무역시 경제 또는 기타 무역사항에 관한 공정관행 확보에 우선권을 둔다.

수출국의 관할당국에서 적용된 식품관리제도를 수입국에서 인정.

13. 수입식품관리제도에는 수출국의 관할당국에서 적용된 식품관리제도를 적절히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입국은 제품의 통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즉 양해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및 동등성협정(equivalence agreements) 및 일방인정(unilateral recognition)을 통해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은 적절히 식품의 생산, 제조, 수입, 가공, 보관 및 운송동안에 적용된 관리와 수출식품관리제도의 검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내 일률적인 시행

- 14. 운영절차의 통일성(uniformity)은 특히 중요하다. 모든 검사직원과 모든 통관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검사매뉴얼이 개발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수입식품의 보호수준은 국내식품의 보호수준과 일관되도록 시행함.

- 15. 수입국은 다른 국가의 제조식품에 적용된 공정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국내 및 수입식품의 적합모니터링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식품의 보호수준이 국내식품의 보호수준과 일관된다고 보장된다면 접근방식의 차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

제 4 조 - 관리제도의 시행

- 16. 운영절차는 규제사항에 부합한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통관시점에서의 과도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제도를 시행할 때 동조문에 기재된 요소와 수출국에서 시행한 관리를 포함한 원산지의 보증(quarantees)의 인정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관리시점

- 17. 수입국의 수입식품관리는 다음 시점의 한시점 또는 그 이상의 시점에서 수행될 수 있다.

- 수출국과 합의된 경우 원산지
- 도착 국가의 통관시점
- 재가공
- 운송 및 유통
- 보관 및
- 판매(소매 또는 도매)

18. 수입국은 수출국에서 시행한 관리를 인정할 수 있다. 수출국에서의 생산, 제조 및 운송에 관한 관리는 문제발생시 발생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이미 유통된 식품의 회수시에도 필요하다.
19. 선적전 통관(preshipment clearance)이란 고가의 벌크포장제품으로 통관시 개봉하여 시료채취를 하게 되면 심각하게 제품이 손상될 수 있거나 또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유지를 위해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규제사항에 따른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20. 검사제도에 선적전통관제도가 있다면 통관을 담당하는 당국이 결정되어야 하며 절차도 규정되어야 한다. 수입국의 관할당국은 수출국의 정부인증제도(official certification system)나 규정된 기준을 따라 제삼자 공인인증기관(officially recognised third party certification bodies)을 통해 선적전 통관절차(preshipment clearance)를 밟을 수 있다. 선적전통관제도는 화물의 서류검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식품정보

21.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조치를 적용하여 얻어지는 관리제도의 효율성은 관할권 내에 들어오는 화물의 정보에 따라 달라진다. 수집할 수 있는 화물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5. 일반 공식증명서서식 및 작성·발급(Generic Official Certificate Formats and the Production and Issuance of Certificates)(CAC/GL 38-2001)

- 통관날짜 및 장소
- 운송방법
- 상품의 포괄적인 설명(description)(제품설명서, 양, 보존방법, 원산지 및/또는 운송국, 로트표기 또는 봉인확인번호등과 같은 확인표시)
-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장등록번호 등 제조업자 및/또는 생산업자
- 도착지 및
- 기타 정보

수입식품의 검사빈도수 및 검사

22. 수입식품의 검사성격과 빈도수, 시료채취 및 검사는 제품에 나타난 인체건강상 위해와 제품의 안전성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나타난 인체건강위해
- 부적합 가능성
- 소비자 대상그룹
- 제품의 재가공 범위 및 성격
- 수출국의 식품검사및인증제도 및 동등성, 상호인정협정 또는 기타 무역협정의 유무 및
- 생산업자, 가공업자, 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의 적합이력

23. 시료채취계획을 토대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는 수입제품의 물리적 검사(physical check)는 수입국규정을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또는 재수출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최종 도착국 규정을 따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증명서에는 해당규정이 명기되어야 한다. 재수출제품등에 대한 시료채취 빈도수나 검사강도를 포괄한 검사절차도 개발되어야 한다.

24. 적합이력이 없거나 적합률이 떨어지는 출처(source)에서 공급된 제품의 시료채취빈도수는 적합이력이 좋은 제품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설정될 수 있다. 단, 이 과정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료채취과정을 통

해 적합이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유사하게 적합이력이 좋지않은 업자로부터 수입되거나 공급된 식품은 보다 높은 강도로 시료채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화물이 규정된 횟수만큼 연속적으로 적합판정이 나올때까지 모든 화물은 물리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적합이력이 좋지 않은 공급업자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억류할 수 있는 검사절차를 개발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만족스러운 적합률이 나올 때까지 관할당국에서 인정하였거나 등록된 실험실(정부실험실 포함)을 통해 개별 화물의 적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시료채취 및 분석

- 25. 특정 식품/오염물질을 위한 Codex 시료채취계획이 있는 경우 검사제도는 이를 토대로 해야 한다. Codex 시료채취계획이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채택되었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시료채취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 26. 국제적으로 비준된 분석방법규격이나 국제의정서를 통해 비준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정부 또는 공인실험실에서 분석해야 한다.

결정(Decision)

- 27. 화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결정기준(통관절차 적용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개발해야 한다.

수락

- 적합성에 관한 검사 또는 검증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통과
- 부적합제품을 재조정 및/또는 보정조치 후 유통
- 거부통지, 단, 식용이외의 용도로 제품재조정지시
- 거부통지, 단, 수출업자 부담하에 재수출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지시
- 파기지시를 내린 거부통지

- 28. 화물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검사와 필요시 시험분석 결과를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 검사제도에는 결정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시료채취결과 화물중 일부 롯트만이 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난 경우에 관한

의사결정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전 적합이력에 대한 시험검사도 등 절차에 포함될 수 있다.

29. 검사제도에는 화물의 통관이나 상태에 관한 결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⁶ 화물에 대한 공식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항소제도 (appeal mechanism) 및/또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⁷ 식품이 수입국의 국가규격을 따르지 않아 통관거부되었으나 국제규격을 따른 경우 해당식품에 내린 조치의 철회를 검토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에 대응

30. 관할당국은 긴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긴급상황의 대응이란 도착된 의심제품을 억류하거나 이미 통관된 의심제품의 회수절차 및 해당 문제와 취한 조치를 국제기구에게 신속히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31. 수입국의 식품관리당국이 수입식품의 관리도중 긴급상황으로 나타날 만큼 심각한 문제를 확인한 경우 그 사항을 전자통신수단으로 신속히 수출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⁸

수출관리인정

32. 동지침서의 12항과 일관되도록 수입국은 수출국의 관리제도가 수입국에서 요구한 동일한 보호수준에 도달하는 경우 수출국의 관리제도를 인정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수입국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수입식품의 통관거부에 관한 국가간 정보교환지침서(Guideline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on Rejections of Imported Food) 4항이 협의되어야 함.
7. 수입식품의 통관거부에 관한 국가간 정보교환지침서(Guideline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on Rejections of Imported Food) 6항이 협의되어야 함.
8. 식품안전사고발생시 정보교환지침서(Guidelines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Food Control Emergency Situations)(CAC/GL 19-1996)

- 식품의 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의 계획,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 (Guidelines for the Design, Operation,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AC/GL 26-1997)의 별첨에 따라 수출국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 모든 식품의 포함여부 또는 특정 상품이나 특정 제조업자에게 제한여부 등의 협정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수출국에서 개발한 협정이 범위상 제한된다면 적정보호수준에 도달하는 통관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 통상 수입검사의 면제 등으로 수출관리를 인정한다.
- 도착한 제품에 대해 무작위시료채취 및 분석과 같은 검증절차를 수행한다(교역식품을 인증하는 검증제도 및 관련규정은 CAC/GL 26-1997의 제5조 및 별첨 참조).
- 협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전제하에 개별화물에 대한 서류나 증명서의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함을 인정한다.

33. 수입국의 관할당국은 규제사항을 준수하면서 수출국 정부인증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과 인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동협정의 경우 실험실과 화물추적제도와 같이 특정시설에 제한된 접근이 허용된 경우 더욱 유용할 수 있다.⁹

정보교환

34. 수입식품관리제도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관할당국간 정보교환이 있어야 한다. 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다.
- 식품관리제도 규제사항
 - 특별 화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하드카피증명서(hard copy certificate)'
 - 관련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전자자료(electronic data) 또는 증명서
 - 파기, 재수출, 가공, 제조정 또는 식용이외의 용도로 변경등 부적합식품화물에 관한 세부조치사항,
 - 수입국 규제사항을 준수한 시설이나 공장목록

9. 식품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에 관한 동등성협정개발지침서(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Equivalence Agreements Regarding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AC/GL 34-1999)

35. 기준규격 등 수입의정서 개정시 그 내용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무역상대국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법령공포시점과 적용시점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36. 관할당국은 정기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정(arrangement)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은 수입업자가 공급업자에게 시행하는 관리나 공급업자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해당 절차를 관할당국에서 평가하는 경우의 협정이 될 수 있다. 다른 약정(arrangement)이란 일상 검사가 아닌 감사로 실시하는 제품의 시료채취가 될 수 있다.
37. 관할당국은 수입업자의 의무등록제도를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업자에게 수입식품의 적합성 확보제도 및 수출입업자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8. 제품등록제도가 있거나 시행된다면 동제품등록에 대한 명확한 근거(예, 특정 및 문서화된 식품안전문제)가 있어야 한다. 동 제품등록시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을 동일하거나 동등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도의 문서화

39. 수입식품관리제도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리제도의 범위, 운영, 책임 및 직원의 업무범위등을 충분히 문서화해야 한다.

40. 수입식품관리제도 문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정부검사제도의 조직도(위치 및 조직의 역할포함)
 - 해당 업무분장
 - 시료채취, 검사 및 시험방법등 운영절차
 - 수입식품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
 - 주요 연락처
 - 식품오염 및 식품검사에 관한 정보
 - 직원 훈련에 관한 정보

직원 훈련

41. 수입식품관리제도를 운영할 때 기반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원이 일을 잘 감당하며, 신뢰할 수 있고, 조직화되고 잘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식품 관리제도내에서 일관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원의 훈련, 의사소통 및 감독관리가 필요하다.
42. 수입국의 관할당국이 제삼기관을 특정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인하는 경우 그 기관의 검사원의 자격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관할당국의 검사직원의 자격과 최소한 같아야 한다.
43. 수출국의 식품관리제도를 평가할 책임이 있는 수입국의 관할당국은 국내 식품 관리평가직원에게 요구되는 적정 자격, 경험 및 훈련을 갖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제도검증

44. 제도검증은 식품의 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에 관한 계획, 운영,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Design, Operation,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AC/GL 26-1997)) 제9조를 기초로 수행되어야 하며 수입식품관리제도는 정기적으로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 5 조 - 추가 정보

45. UN FAO 식품품질관리매뉴얼 - 수입식품검사(*Manual of Food Quality Control, Imported Food Inspection*(Food and Nutrition Paper 14/15, 1993)) 및 환경계획및 응용과학((PEPAS; Promotiion of Environment Planning and Applied Science)을 위한 WHO/서태평양지역센터에서 발행한 수입식품검사매뉴얼(*Manual for the Inspection of Imported Food*(1992)))은 수입식품관리제도를 계획하거나 재설정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